# V. 서식(예방접종자 면제서 등)

## <서식-1>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앞 면)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해외에서 백신별 접종 필수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 경과된 경우는 위 항목에 체크

| | | |
|---|---|---|
| 면제대상자 | 성명 | 성별 [ ] 남 [ ] 여 |
| | 국적 | 생년월일 |
| | 여권번호 | 휴대전화(본인) |
| | | E-mail |
| | 체류자격(외국인만) | 한국내 긴급연락처 (초청기업, 가족 등) |
| | 한국내 주소(상세기재) | (전화: ) |
| | 분야<br>※ 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문화·체육, 농림·축산·식품, 건설·교통, 수산·해운, 금융, 중소기업, 산학협력, IT·정보통신·기초과학, 보건·의료, 식품안전·의약품, 방위산업, 방송, 기타 중 택 1 | |
| | 직업(직장/직위명) | 초청기업 및 담당자 연락처 |
| | 출발국가 | 출발일 및 편명 |
| | 국내 입국예정일 | 격리면제 기간 |
| | 국내 출국예정일 | 주요 활동장소 |
| 격리면제 신청 사유 | ※ 중요한 사업상(계약, 투자 등) 목적, 학술·공익·인도적 목적 등 방문목적 관련 상세 사유 적시 | |
| 제출 서류 | ※(예시) 여권사본, 방문목적 증빙자료(사업·행사관련 서류, 사망진단(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등 첨부 | |

상기 본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대한민국 입국 시 7일간 격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3자(복지부, 질병관리청, 외교부 및 재외공관, 법무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보건소 및 의료원, 병원 등 코로나 19 방역관련 공공 행정·의료기관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신청일 : 년 월 일

면제대상자 : (서명 또는 인)

보증인(초청기업·단체 등 대표) : ○○주식회사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수신자: ○ ○ ○ 부 장관 귀하**
**주○ ○ 대한민국 대사(총영사) 귀하**

| | |
|---|---|
| 접 수 자 | (○ ○ ○ 부 / ○ ○ 대사관 또는 부서명) (직급) (성명) |
| 접수일자 | 년 월 일 |
| 유의사항 | 1.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br>2. 격리면제자는 진단검사, 능동감시, 방역수칙준수, 격리면제기간활동계획서 이행의무, 격리조치 이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br>3. 신청서는 관련부처와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내용이 동일하여야 합니다(내용 변경 불가). |

#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뒷 면 )

○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 면제대상자 또는 초청기업·단체 작성

※ 격리면제 전체기간(최대 7일)에 대해, 일자별 방문장소 및 대상(사업 파트너 등) 등 포함하여 상세 작성(필요시 별도 용지에 구체계획 첨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자격으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하는 경우 작성 불필요

상기 본인은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퇴거되거나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을 서약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3자(복지부, 질병관리청, 외교부 및 재외공관, 법무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보건소 및 의료원, 병원 등 코로나 19 방역관련 공공 행정·의료기관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신청인 ○ ○ ○ (인 또는 서명)

신청일 : 년 월 일

면제대상자 : (서명 또는 인)

보증인(초청기업·단체 등 대표) : (서명 또는 인)

**○○○부 장관,**
**주ㅇㅇ대한민국 대사(총영사) 귀하**

# <서식-2> 격리면제 동의서

1. 본인은 격리면제서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 대한민국 입국 후 진단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대기), 입국후 6~7일 사이 진단검사(7일이내, 음성확인서 제출), 능동감시(자가진단앱 설치 및 증상 입력 등) 의무 수행, 방역수칙 준수,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이행(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자는 해당없음) 및 (검사결과 양성판정 등 필요시) 방역당국의 격리조치 성실 이행 등

2. 본인은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고지받았으며 향후 이를 어길 시 관련법규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① 입국단계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에 적합하게 발급받은 PCR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격리면제서의 효력은 중단됩니다.

   ② 입국 후 6~7일 사이 진단검사를 받고 7일이내 PCR음성확인서를 심사부처* 및 주소지 소관 지자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격리면제서의 효력은 중단됩니다.

   * 공무출장의 경우 출장주관 부처에 제출

   ③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받은 경우에는 한국 입국 전 14일 이내에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기지정 또는 신규지정)에 체류·출국·경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은 즉시 중단됩니다.

3. 본인은 격리면제서 신청 목적에 한정하여 대한민국에서 활동할 것이며,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거나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될 경우 격리면제의 효력이 즉시 중단되고 격리(자가 또는 시설*) 조치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시설 격리 시 이용료 본인 부담(1일 최대 12만원)

4. 또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상기 1항의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진단검사 거부, 능동감시 의무불이행,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이행의무 불이행, 격리조치 거부 등),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 퇴거되거나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3자(복지부, 질병관리청, 외교부 및 재외공관, 법무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보건소 및 의료원, 병원 등 코로나 19 방역관련 공공 행정·의료기관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신청일 : 년 월 일

면제대상자 : (서명 또는 인)

**○ ○ 부 장관 귀하**

**주 ○ ○ 대한민국 대사(총영사) 귀하**